

소비세 면제 절차에 관하여

1. 免税とは

면제란?

- 消費税とは、日本国の国内法である消費税法によって賦課される税金です。

소비세란 일본국의 국내법 중 소비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財貨・サービスの取引により生ずる付加価値に着目して課税することから、

欧米のValue-Added Tax、付加価値税、もしくはGoods and Services Tax、物品税に相当します。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착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유럽·미국의 Value-Added Tax, 부가가치세 또는 Goods and

- 当店で免税は、日本国内における消費税の免税であり、外国人のお客様のために設けられた税法上の特例措置です。

당점에서의 면제는 일본국내에 있어서의 소비세 면제이며 외국인 고객을 위해 제정된 세법 상의

- 免税の手続きはすべて消費税法に規定されており、当店の判断に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모든 면제 절차는 소비세법 내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 お買い上げになった物品に付加された消費税5%を免税し返金いたします。

구입하신 물품에 부가된 소비세5%를 면제하여 돌려드립니다

2. 免税を受けることの出来るお客様

면제 대상 고객님

- 日本に入国して6ヶ月以内の外国籍のお客さま。

일본에 입국하신지 6 개월 이내의 외국국적

※日本入国時の旅券にある上陸許可の証印が「再入国」でないもの。

일본 입국 시 여권에 표시된 상륙허가 증인이 「재입국」 이 아닌 것

- 旅券にある在留資格が「外交」「公用」のお客様。

여권에 표시된 재류자격이 「외교」 「공용」 인 고객님

※日本入国後6ヶ月以上経過していても可。

일본 입국 후 6 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가능합니다.

3. 免税の条件

면제 조건

- 免税の対象となる物品は、化粧品、飲食料品、たばこ、医薬品、フィルム、電池などの消耗品を除く通常生活の用に供する物品で、一取引の合計金額が10,501円を超える場合です。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음필름, 식료품, 담배, 의약품, 화장품, 전지 등의 소모품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거래 한 건 당 합계 금액이 10,501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免税対象

면제대상



合計金額10,501円以上の生活用品

합계 금액 10,501엔 이상인 생활용품

免税対象外

면제대상의



合計金額10,501円未満の生活用品
化粧品・食料品・たばこなどの消耗品

**합계 금액 10,501엔 미만의 생활용품
필름, 식료품 · 담배 등의 소모품**

4. 免税の手続き

면제 절차

- 物品購入者本人の旅券(コピーは不可)を提示してください。

물품 구입자 본인의 여권(사본불가)을 제시해 주십시오

- 出国の際に国外へ持ち帰ることを記載した購入誓約書を提出してください。

출국 시 국외로 반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구입서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当店がお客様の旅券に輸出免税物品購入記録票を貼ります。

※輸出免税物品購入記録票は、お客様が出国する際に税関が回収いたします。

당점이 고객님의 여권에 수출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붙입니다.

※수출면세물품 구입기록표는 고객님의께서 출국하실 때에 세관이 회수합니다